24년 제47회 온라인 실전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 정정 사항

과목	회차-번호	수정 전	수정 후
보험업법	2회차-34번	34. ③ [해설]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<u>요구</u> 할 수 있다.	34. ①, ③ [해설] ① 금융감독원(x) 금융위원회(o) 보험업법 제162조 참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,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(이하 이 장에서 "관계자"라 한다)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1.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사실이 있는 경우 2.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 1.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2. 조사에 필요한 장부, 서류, 그 밖의 물건의 제출3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.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	3회차-22번	22. 보험업법상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것으로 <u>맞는</u> 것은?	22. 보험업법상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것으로 <u>틀린</u> 것은?
보험계약법	3회차-24번	24. ④ [해설]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고,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 한 후,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상법상의 의무이다.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제한 경우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발생한다.	24. ①, ④ [해설] 상법 제723조 참고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, 승인,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면제,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한 전체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 ④ 상법상의 의무이다.